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기관 본인 ·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 · 자격확인 강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과태료 등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도기간 운영 방안>

-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 (내용) 본인 · 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 (적용기간) 2024.5.20.~ 2024.8.20.(3개월간)

3. 이에 불임과 같이 보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 · 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내 본인확인 시 환급하는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여 방문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1부.

2. 요양기관 본인 · 자격확인 강화 포스터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공의료주진단장),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정신건강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공공보건의료과장), 대전광역시장(건강보건과장), 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공공의료과장), 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 경기도지사(정신건강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의료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주무관 문현진 행정사무관 안정습 보험정책과장 조총현
전결 2024. 5. 20.

협조자

시행 보험정책과-168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보험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18 팩스번호 044-202-3933 / esther0221@korea.kr / 비공개(5)